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1. 제안이유

-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 나. 안 제3조 (지원대상)
- 다. 안 제5조 (지원신청)
- 라. 안 제6조 (지원절차)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조(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